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술개발 활동조사에 성별 인력현황·수요전망 반영〉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01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술개발 활동조사에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반영(안 제7조)	2
[참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개요	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2021년에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영향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및 성평등 이슈 및 성인지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별·연령·지역·장애·직업 등 다양한 삶에 미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함에 있어서,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적응대책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기술개발 활동조사에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반영(안 제7조)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항목 중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성별’ 요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 (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 을 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분야별</u> ·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 요 전망	2. <u>성별</u> · <u>분야별</u>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조 및 제6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¹⁾.

□ 또한 현행법 제7조²⁾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³⁾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현황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1회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개발 활동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후기술 분야의 정책수립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온실가스 감축·기후 변화 적응기술 분야의 기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출액, 연구개발비, 인력, 성과, 협력활동 등을 조사·통계화하는 것임(참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개요).

□ 개정안은 이러한 기술개발 활동조사 실시 시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성별’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기술 관련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
2. 분야별·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기능별 기술개발 및 투자 규모
4. 기술개발 성과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4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인력구조 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성인지적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활동조사 수행 시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을 파악하도록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 활동조사 과정에서 기존 설문 문항에 성별 구분을 추가하는 등 일부 보완만으로도 개정안에 따른 자료 생산이 가능하여 이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9

□ 조사 개요

- (명칭)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국가승인통계 제442001호)
- (목적) 기후기술 분야의 현황(매출액·연구개발비·인력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기후기술 R&D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근거법령) 「기후기술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수행기관) 주관기관(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 실시기관(용역업체)
- (경과) 전문기관(NIGT) 통계생산('13년~) →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지정('17년~) → 근거법령 시행('21.10월) 및 법정통계화 → '23년도 통계 발표('25.11월)
- (내용) 조사 대상 기업·연구기관의 기후기술 분야 매출액, 연구개발비, 인력(종사자), 성과, 국내외 협력 활동 등

□ 조사 방식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기반의 온라인·전화 팩스 조사 병행 실시
- (조사대상 기술 분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온실가스 감축)·제3조(기후변화 적응)에 해당하는 기술

[참고] 2024년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분류체계

◆ 2개 대분류, 9개 중분류, 22개 소분류(통계 생산단위)로 구분

▶ (대분류 ①) 온실가스 감축 분야(소분류 15개)

: △ 태양광·열, △ 풍력, △ 해양에너지 및 수력, △ 수열 및 지열, △ 바이오에너지,
△ 수소 암모니아 발전, △ 비재생에너지, △ 수소·바이오매스, △ 폐자원, △ 발전효율,
△ 산업효율, △ 수송효율, △ 건물효율, △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 전력·열 통합

▶ (대분류 ②) 기후변화 적응 분야(소분류 7개)

: △ 기후변화 모니터링, △ 기후영향평가·진단, △ 건강, △ 물, △ 농축수산,
△ 국토연안, 산림생태계, 산업 에너지, △ 적응정보·평가

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1.)

- (모집단 선정기준) 기후기술 관련 특허* 등록경험 보유 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여 직접성과**를 보유한 기업·기관 (13,574개소)

* 기후변화대응 기술 특허인 CPC-Y02/04 해당 기업·기관, 그 외 특허의 기후기술 R&D 유사성을 검토하여 비기술 범위 특허를 제외한 기술개발 기업·기관 선별

** 기후기술 R&D 참여 기술개발 성과(논문·특허·기술료·사업화) 보유 기업·기관